

##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제 안 설 명

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525 |
|------------|------|

임만균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관악구3)

-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
-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, 농업·임업피해,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관계 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